

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의안 번호	66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:2003. 9. 9
제출자:신교선의원외 6인

1. 주 문

가.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나. 심사기간은 2003년 9월 17일, 1일간으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가.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위원7인으로 구성한다.

3. 참고사항 : 없 음

심 사 계 획

1. 활 동 목 적

-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
- 신속한 의사진행

2. 심 사 안 건

1.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2. 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3. 평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
4. 평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
5.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6. 평창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7. 평창군장례식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3. 활 동 기 간

- 2003년 9월 17일, 1일간으로 한다.

4. 구 성

- 이만재의원, 차재천의원, 고웅중의원, 이수현의원, 신교선의원, 심재국의원, 김영해의원

5. 운 영 계 획

일 시	차 수	내 용	비고
9.17(수)	제1차조례특위 (1000)	1.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.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.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. 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. 평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. 평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 조례안 7.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. 평창군장례식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. 평창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	